「2027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」

심 사 보 고 서

Ⅰ. 심사경과

1. **제출일자**: 2026년 10월 6일
2. **제 출 자**: 구미시장
3. **회부일자**: 2026년 10월 7일
4. **상정일자**: 2026년 10월 14일
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Ⅱ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: 기획조정실장 김 은 영

2. 제안이유

가. 국토부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상 국고지원액(중심시가지형, 150억원)에 비례한 주택도시 보증기금을 10% 이상 활용토록 의무화

나.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 신청 및 선정된 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7년도 구미시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 제2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지방채 발행계획

(1) 발 행 액 : 1,500,000,000원(금일십오억원)
(2) 차 입 선 : 주택도시보증공사
(3) 연　　리 : 2.2%(변동금리)

(4) 상환기간 : 7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균등분할상환(연장시 최장17년)

(5) 상환재원 : 시비

(6) 발행방법 : 증서차입채

나. 사업개요

(1) 사업기간 : 2022 ~ 2026년 *※ 2028년까지 연장 추진중*

(2) 위　　치 : 구미시 원평동 1028-2번지 일원(250,236㎡)

(3) 총사업비 : 26,500백만원(국 15,000 도 2,500 시 7,500 지방채 1,500)

(4) 사업내용

- 거점시설 4개소 조성, 도심여가 휴게공간 조성, 상업문화 특화가로 조성
- 도심인프라 개선,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(보안등, CCTV 등)
- 연령별 프로그램 운영, 주민·상인역량강화 교육, 문화행사 개최 등

(5) 집 행 률 : 50%(2026. 9월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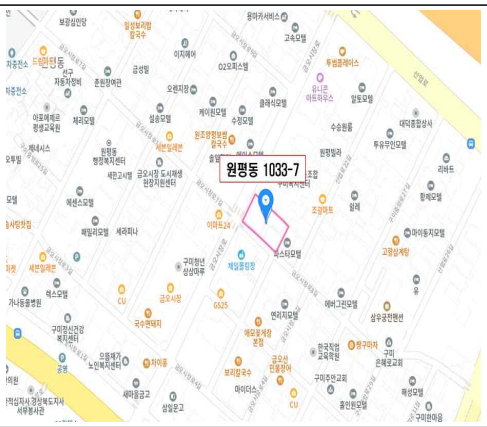
다. [상상어울림플랫폼 소통] 세부사업개요

(1) 위　　치 : 구미시 원평동 1028-2번지 일원(250,236㎡)

(2) 사 업 비 : 8,520백만원(국 4,734 도 789 시 1,497 지방채 1,500)

(3) 사업규모 : 지하1층/지상5층, 연면적 1,791.8㎡

(4) 공 정 률 : 25%(설계완료 및 공사 발주 전 행정절차 이행중)



위치도



현황사진

라.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

(1) 2021년 선정된(국토부)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15,000백만원의 10%에 해당하는 1,500백만원을 거점시설 '상상어울림플랫폼 조성비'에 활용하도록 계획

(2)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 조성비 조달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여 주민·상인 커뮤니티 활성화 등 구도심의 기능 보강 및 도시의 자생력 확보

마. 연도별·재원별 투자계획

(단위:백만원)

재원별	합 계	기투자	금회계획	금후계획	비 고
계	26,500	24,964	1,536	-	
국 비	15,000	15,000	-	-	
도 비	2,500	2,500	-	-	
시 비	7,500	7,464	36	-	
지방채	1,500	-	1,500	-	

4. 근거법령

가.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제1항 및 제2항

나.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(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) 제1항

다.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) 제3항 및 제27조(보조 또는 융자)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동의안은

-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 15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된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되나, 발행한도와 기존 채무를 포함한 상환 부담을 확인하고 차입 시기·상환 방식·재원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임.

- 또한,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관리하고, 사업기간 연장과 시설 조성 일정에 맞춰 차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　　음

Ⅴ. 토　론　요　지: 없　　음

Ⅵ. 소수의견의 요지: 없　　음

Ⅶ. 심　사　결　과: 원안가결